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**대 한 병 원 협 회**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「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」 개정 관련 안내

1. 관련근거 : 가.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부-2449(2015.4.2)

나.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-16(2015.3.31)

2. 위 근거와 관련,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선택진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항목 (진찰·마취·수술·방사선 특수영상 진단)에 대한 급여화(2015.4.1 진료 분부터), 재활 치료팀 회의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」이 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 안내합니다

- 붙임 : 1. 산업재해보상보험 선택진료비 및 재활치료료 관련 안내문 1부
2.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고시문 및 전문 1부
3.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설 및 변경 항목 청구코드 1부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수신처

전국 병원장

사원 장승재 팀장 노환우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133 (2015.04.10)

우 121-737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2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jsj@kha.or.kr